제300회 임시회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병도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병 도 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, 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이병도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'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헌법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, 근로기준법은 연소자의 노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소자의 노동과 일반근로자의 노동을 구분 시켰습니다.

법에도 적혀있듯이 청소년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하며, 그 이유에는 청소년은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들 수있습니다.

실제 노동 현장에서 사업주들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부족한 사회경험을 빌미로 삼아 그들의 노동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빈재하나, 청소년 본인들은 그들의 노동 인권이 침해 당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노동 인권을 높이고자 합니다.

또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행 계획들을 규정하였습니다.

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